

제104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제안서

제 안 안건명	2019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안)
--------------------	-------------------------------------

안 건 번호	2019-23
-------------------	---------

발의년월일 : 2019. 11. 25.

제 안 자 : 학교장

소 관 부 서 : 방과후학교부

1. 제안이유

- 학생, 학부모, 교원이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2019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 2020년 1월 6일(월) ~ 1월 17일(일) (2주간)

나. 운영 프로그램 변경

2019학년도 여름방학 운영 프로그램	2019학년도 겨울방학 운영 프로그램
돌봄교실, 뉴스포츠, 중국어, 영미문화체험, 국악(사물놀이, 가야금, 소금, 거문고, 피리)	돌봄교실, 뉴스포츠, 중국어, 영미문화체험 미술

-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예체능의 조화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고자함

3. 첨부 서류

- 2019학년도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시간표

2019학년도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시간표

★ 1월 6일 ~ 1월 17일

간중초등학교

구 분	월				화				수				목				금				
	교 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학년	뉴스포츠 (간중관)	중국어 (1교실)	미술 (1교실)		중국어 (1교실)	뉴스포츠 (간중관)	컴퓨터 (컴퓨터실)	돌봄A (1교실)	돌봄A (1교실)	뉴스포츠 (간중관)	미술 (1교실)		중국어 (1교실)	독서 (1교실)	돌봄A (1교실)	뉴스포츠 (간중관)	중국어 (1교실)	미술 (1교실)			
2학년	중국어 (2교실)	뉴스포츠 (간중관)			돌봄B (2교실)	뉴스포츠 (간중관)	중국어 (2교실)	독서 (2교실)	뉴스포츠 (간중관)	돌봄B (2교실)			돌봄B (2교실)	뉴스포츠 (간중관)	중국어 (2교실)	컴퓨터 (컴퓨터실)	중국어 (2교실)				
3학년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미술 (4교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뉴스포츠 (간중관)	중국어 (4교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미술 (4교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뉴스포츠 (간중관)	중국어 (4교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미술 (4교실)		
4학년							미술 (6교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뉴스포츠 (간중관)
5학년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6학년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영미문화체험 (과학실)						
하 교	12:20 통학버스(1차)										12:45 통학버스(2차)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 뉴스포츠(간중관), 중국어(1학년, 2학년, 4학년 교실), 돌봄A(1학년 교실), 돌봄B(2학년 교실), 독서(1,2학년 교실)
 영미문화체험(과학실), 컴퓨터(컴퓨터실), 미술(1,4,6교실)

제안 안건명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추가 운영(안)
-----------	--------------------------------

안건 번호	2019-24
----------	---------

발의년월일 : 2019. 11. 25.
제안자 : 학교장
담당자 : 교무부

1. 제안이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

-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나. 대상 및 장소: 꿈반 학생 고** 외 4명, 지역사회 시설 이용

다. 운영기간: 2020.2.3.~2020.2.6.(총 3일)

라. 프로그램명: 심신 발달을 위한 스포츠활동

마. 지도강사: 내부강사(특수교사)

바. 지도시간: 월, 화, 목요일 5~8교시

※시간은 학교의 사정과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3. 방과후학교 예산

가. 예산은 외부기관 지원 프로그램비 50만원 되는 예산으로 한다.

나. 운영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체험비 및 준비물 등으로 구입하여 제공한다.

순	기간	시간	방과후학교 예산	
			금액(원)	산출내역
1	2020.2.3.(월)~ 2.6.(목)	5~8교시	500,000	500,000원 × 1건
총계			500,000원	

붙임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추가 운영 계획서 1부. 끝.

(붙임1)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추가 운영 계획(안)

간중초등학교

1 목 적

- 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장애아동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킨다.

2 방 침

- 가.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 다. 수업시간은 40분을 한 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특성과 학교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
- 라. 본교의 프로그램 편성, 운영 등 방과후학교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은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3 강좌명

- 가. 심신 발달을 위한 스포츠활동

4 대상 및 장소

- 가. 대상 및 장소 : 5명(지적장애), 간중초등학교 꿈반

순	이름	학년 / 반	비고
1	고**	1-1	
2	한**	2-1	
3	박**	4-1	
4	차**	5-1	
5	서**	6-1	

5 지도강사 (담당자)

- 가. 지도강사: 내부강사(특수교사)

6 시간계획

가. 운영일: 2020.2.3.(월)/2.4.(화)/2.6.(목)

나. 운영 시간: 5~8교시 (주 3일)

다. 시간 운영 계획: 정규 교육과정 이외 시간을 이용하여 운영하되 운영일과 시간은 학교의 사정과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7 세부지도계획

1) 지도내용

2020년

월	날짜	영역	활동내용
2	3(월)	체육	롤러킹(롤러스케이트)
	4(화)	체육	놀토피아(클라이밍, 스포츠, 키즈존)
	6(목)	체육	한옥 레일바이크(철로 자전거)

8 지도방법

가. 방과후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여가생활을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아동의 현재 능력, 관심,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다양하게 편성한다.

다. 단계를 세분화시켜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라. 체험활동 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마.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9 소요금액

가. 방과후학교 예산

1) 예산은 방과후 외비기관 지원비 50만원 지원되는 예산으로 한다.

2) 운영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스포츠활동 체험비 및 준비물 등으로 구입하여 운영한다.

순	기간	시간	방 과 후 학교 예산	
			금액(원)	산출내역
1	2020년 2월	5~8교시	500,000	500,000원 × 1건 = 500,000원
총계			500,000원	

10 | 평가

가.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차기 반영한다.

11 | 기대되는 효과

- 가. 학습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 될 것이다.
- 나. 경험의 폭이 확대되어 사회와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능력과 사회성이 신장 될 것이다.
- 다. 장애아동의 여가생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 안 안건명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

안 건 번 호	2019-25
--------------------	---------

발의년월일 : 2019. 11. 25.
제 안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행 정 실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6.6.17. 조례 제4279호)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 회기: 회의 연4회이상 개최 조항 삭제

Ⅲ.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6.6.17. 조례 제4279호)
- 교원인사과-3043(2019.2.14.)

붙임 : 1. 신규대조표 1부
2.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선출관리위원회 운영)</p> <p>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2명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④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제5조(선출관리위원회 운영)</p> <p>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1인, 학부모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1인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하여 2명으로 한다</p> <p>④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p> <p>⑤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22조(회기)</p> <p>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제22조(회기)</p> <p>⑥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019. 11. 19.

간 중 초 등 학 교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제정(1998. 4. 01.)
개정(1999. 5. 10.)
개정(2000. 3. 14.)
개정(2000. 5. 16.)
개정(2003. 9. 23.)
개정(2006. 9. 28.)
개정(2007. 9. 27.)
개정(2011.12. 21.)
개정(2012. 8. 23.)
개정(2013. 2. 20.)
개정(2016. 2. 17.)
개정(2017.10.24.)
개정(2019.11.2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전라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간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 20.>

제2장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초등학교 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02. 20.>

②유치원은 학부모 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개정 2013.02. 20.>

③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①항과 제②항의 위원수를 합한 10명으로 한다. <개정 2013.02.20.>

④위원 정수는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회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할 때는 학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운영) ①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02.20.>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1인, 학부모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1인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하여 2명으로 한다(개정 2019.11.27.)

④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27.)

⑤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1.27.)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7.>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듣고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⑥개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선거인 명부 작성 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원아)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개정 2013.02.20.>

2. 학생(원아)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개정 2013.02.20.>

제7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9조(보궐 선출)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신설 2017.10.24.>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은 본교(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원아의 학부모로 한다. <개정 2013.02.20.>

②교원위원은 본교(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02.20.>

③위원은 다른 학교(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02.20.>

제12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12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6.02.17.>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02.17.>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7.>

제13조(위원의 당연퇴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학생(원아)의 졸업과 전학, 교원의 전보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생(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2.20.>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③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급식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 위원 및 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중에서 2명을 추천한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제3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 학교현장 및 학칙, 유치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및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원)장의 공모방법, 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 및 원아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⑤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2.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3.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 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제안·건의)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의 협조 등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청원 심사) ①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이 학교장 또는 관할청과 관련 있는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그 청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①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제22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학년 초에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회의는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삭제)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7.)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이를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공개 원칙)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작성 등) ①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9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교감의 참여) 교감은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운영경비 등)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

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신설 2016.02.17.>

제34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7.>

제3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20.)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 안건명	2019학년도 간중초등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안)
-----------	----------------------------

안건 번호	2019-26
----------	---------

발의년월일 : 2019.11.25.

제안자 : 학교장

소관부서 : 행정실

1. 제안이유

2019학년도 간중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통하여 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의 타당성·합리성을 평가·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학생장학금

나. 목적: 학생장학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이월 및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계획

가. 원안

○ 수입계획서

(단위:원)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학생장학금	1,974,800	2019.3.1.~2020.2.29.	독지가	1,974,800
학생장학금	1,000,000	2019.3.1.~2020.2.29.	기타	1,000,000
계	2,974,800			2,974,800

○ 지출계획서

(단위: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학생장학금	2,974,800	2019.3.1.~2020.2.29.	학생복지및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학생장학금	2,974,800

제안 안건명	2019학년도 간중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	------------------------------

안건 번호	2019-27
----------	---------

발의년월일 : 2019.11.25.
제안자 : 학교장
소관부서 : 행정실

I. 제안이유

전라북도 독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의거 2019학년도 간중초등학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II. 주요내용

(단위: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514,944	300,848	214,096	71.2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정책사업	금회	누계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190,726	422,273	인적자원 운용	28,703	35,743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0	학생복지/교육격차 차 해소	80,927	108,07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1,513	84,817	기본적 교육활동	20,393	79,193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15	732	선택적 교육활동	45,362	106,287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972	7,122	교육활동 지원	13,074	27,284
합 계		214,096	514,944	학교 일반운영	25,637	156,364
				학교 재무활동	0	2,000
				합 계	214,096	514,944

III. 세부 사항

1. 세입 내역

가.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190,726천원

나. 학부모부담수입 : 21,513천원

- (주요항목)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누리과정비, 돌봄활동운영비

다. 행정활동수입 : -88천원

- (주요항목) 사용료,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2. 세출 내역

가. 인적자원 운용 : 28,703천원

- (주요항목) 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교원인건비, 교직원 연수, 교직원복지

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 80,927천원

- (주요항목) 학교급식운영,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 및 누리과정비 지원등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우선사업, 학생복지운영 등

다. 기본적 교육활동 : 20,393천원

- (주요항목) 교과활동지원, 과학교과활동, 외국어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유치원교과활동, 자율활동, 현장체험학습활동, 동아리활동 등

라. 선택적 교육활동 : 45,362천원

- (주요항목)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 독서활동 운영, 다문화교육운영 등

마. 교육활동 지원 : 13,074천원

- (주요항목) 교무학사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학생안전교육, 정보화실 운영 등

바. 학교 일반운영 : 25,637천원

- (주요항목) 행정실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학교시설장비유지, 학부모교육, 학교자치활성화 등

붙임 2019학년도 간중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1부.

2019 학년도

간중초등학교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서(안)

(1차추경예산)

간중초등학교

간중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 구분 : 추경1회

예산확정일		예산액	514,944,000
-------	--	-----	-------------

제1조 2019학년도 간중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514,944,000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 와 같다.

2019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 이전수입					422,273	231,547	190,726		
1.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422,273	231,547	190,726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422,273	231,547	190,726		
1. 학교회계전입금					422,273	231,547	190,726		
1. 학교운영비전입금					232,973	231,547	1,426	학교기본운영비 : (197,764,000원 × 1교) - 400,000 197,364,000원 =	
2. 목적사업비전입금					189,300	0	189,300	학교기본운영비(유치원) : (35,209,000원 × 1교) - 34,183,000원 = 1,026,000 (성립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 4,000,000원 × 1교 = 4,000,000 (성립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 (5,500,000원 × 1교) - 4,000,000원 = 1,500,000 (성립전)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비(지자체) : 5,000,000원 × 1교 = 5,000,000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 : 31,609,000원 × 1교 = 31,609,000 (성립전)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 10,800,000원 × 1교 = 10,800,000 (성립전)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교원보혐료기관부담금 : 1,301,000원 × 1교 = 1,301,000 (성립전)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교원보혐료기관부담금 : (2,601,320원 × 1교) - 1,301,000원 = 1,300,000 (성립전)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교원인건비 : 11,467,000원 × 1교 = 11,467,000 (성립전)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교원인건비 : (24,641,330원 × 1교) - 11,467,000원 = 13,174,000 (성립전)초등돌봄교실운영비 : 21,040,000원 × 1교 = 21,040,000 (성립전)초등돌봄교실운영비 : (33,840,000원 × 1교) - 21,040,000원 = 12,800,000 수학여행비지원 : 3,000,000원 × 1교 = 3,000,000 (성립전)맞춤형학습지원학교운영 : 6,000,000원 × 1교 = 6,000,000 (성립전)공기정화장치 운영비 : 3,500,000원 × 1교 = 3,500,000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 (4,000,000원 × 1교) - 3,500,000원 = 500,000 (성립전)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운영비 : 1,500,000원 × 1교 = 1,500,000 (성립전)소프트웨어(SW)교육 선도학교 운영비 : 8,000,000원 × 1교 = 8,000,000 (성립전)배움터자원봉사자활동비 : 6,720,000원 × 1교 = 6,720,000 배움터자원봉사자활동비 : (3,360,000원 × 1교) - 6,720,000원 = -3,360,000 (성립전)로컬에듀(창의적교육특구) 운영비 : 7,000,000원 × 1교 = 7,000,000 (성립전)토요스포츠강사인건비 : 1,620,000원 × 1교 = 1,620,000 (성립전)유아학비지원금 : 13,860,000원 × 1교 = 13,860,000	

2019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학교로찾아가는소프트웨어교육운영비 : 300,000원 × 1교 = 300,000	
								(성립전)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비 : 3,600,000원 × 1교 = 3,600,000	
								(성립전)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비 : (6,000,000원 × 1교) - 3,600,000원 = 2,400,000	
								(성립전)학교도서관도우미자원봉사활동비 : 1,500,000원 × 1교 = 1,500,000	
								(성립전)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 : 517,000원 × 1교 = 517,000	
								(성립전)학교스포츠클럽활동비 : 580,000원 × 1교 = 580,000	
								(성립전)영어캠프지원비 : 2,800,000원 × 1교 = 2,800,000	
								(성립전)기간제교사성과상여금 : 3,419,000원 × 1교 = 3,419,000	
								(성립전)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교원성과상여금 : 1,186,000원 × 1교 = 1,186,000	
								(성립전)학교자치활성화지원 : 510,000원 × 1교 = 510,000	
								(성립전)학교자치활성화지원 : (2,000,000원 × 1교) - 510,000원 = 1,490,000	
								(성립전)큰 그림책 지원사업 : 401,000원 × 1교 = 401,000	
								배움터자원봉사자활동비 : 3,360,000원 × 1교 = 3,360,000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 : 456,000원 × 1교 = 456,000	
								(성립전)SW교육 교구교체 및 구입 지원비 : 1,500,000원 × 1교 = 1,500,000	
								(성립전)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 250,000원 × 1교 = 250,000	
								(성립전)과학실안전장비구축지원 : 2,700,000원 × 1교 = 2,700,000	
2. 자체수입					85,549	64,151	21,398		
1. 학부모부담수입					84,817	63,304	21,513		
1. 수익자부담수입					84,817	63,304	21,513		
1. 급식비					12,157	14,139	-1,982		
1. 급식비					10,652	11,115	-463	교직원급식비 : (4,070원 × 2,617식) - 11,115,000 = -463,000	
2. 우유급식비					1,505	3,024	-1,519	우유급식비 : (420원 × 3,583개) - 3,024,000 = -1,519,000	
2. 방과후학교활동비					21,800	0	21,800		
1. 방과후학교활동비					21,800	0	21,800	(성립전)방과후학교운영비(지자체지원금) : 8,771원 × 57명 × 10월 = 5,000,000	
								(성립전)방과후학교운영비 : 18,947원 × 57명 × 10월 = 10,800,000	
								(성립전)방과후학교운영비(특수교육대상자) : 120,000원 × 5명 × 6월 = 3,600,000	
								(성립전)방과후학교운영비(특수교육대상자) : 600,000원 × 4명 = 2,400,000	

2019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 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3.	현장체험학습비	3,160	3,160	0		
			1.	현장체험학습비	3,160	3,160	0		
			4.	누리과정비	13,860	0	13,860		
			1.	누리과정비	13,860	0	13,860	(성립전)유아학비지원비 : 110,000원×14명×9회=	13,860,000
			5.	돌봄활동운영비	33,840	46,005	-12,165		
			1.	돌봄활동운영비	33,840	46,005	-12,165	초등돌봄교실운영비 : (0) - 46,005,000 =	-46,005,000
								(성립전)초등돌봄교실운영비 : 36,912원×57명×10월=	21,040,000
								(성립전)초등돌봄교실운영비 : 22,456원×57명×10월=	12,800,000
			2.	행정활동수입	732	847	-115		
			1.	사용료및수수료	35	0	35		
			1.	사용료및수수료	35	0	35		
			1.	사용료	35	0	35	사용료및수수료 : 35,000원×1회=	35,000
			2.	기타행정활동수입	697	847	-150		
			1.	이자수입	697	747	-50		
			1.	이자수입	697	747	-50	정기예금이자 : (308,460원×2회) - 667,000 =	-50,000
			2.	기타행정활동수입	0	100	-100		
			1.	기타행정활동수입	0	100	-100	법인카드포인트 : (0) - 100,000=	-100,000
			3.	기타수입	7,122	5,150	1,972		
			1.	전년도이월금	7,122	5,150	1,972		
			1.	순세계잉여금	7,122	5,150	1,972		
			1.	순세계잉여금	7,122	5,150	1,972		
			1.	순세계잉여금	7,122	5,150	1,972	순세계잉여금 : (5,946,540원×1교) - 4,800,000=	1,146,000
								순세계잉여금(유) : (1,176,600원×1원) - 350,000=	826,000
세입합계					514,944	300,848	214,096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인적자원 운용					35,743	7,040	28,703	
1. 기타 교직원보수					32,153	0	32,153	
1. 교직원대체인건비					32,153	0	32,153	
1. 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교원인건비					28,678	0	28,678	
1. 기간제교원인건비					26,077	0	26,077	(성립전)인건비 1,911,166원×1명×6월= 11,467,000 (성립전)인건비 (2,053,390원×1명×12월) - 11,467,000 = 13,174,000 (성립전)성과상여금 1,186,000원×1명= 1,186,000 (성립전)맞춤형복지비 250,000원×1명= 250,000
2.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2,601	0	2,601	(성립전)4대보험기관부담금 (216,720원×1명×12월) - 1,301,000 = 1,300,000 (성립전)4대보험기관부담금 216,833원×1명×6월= 1,301,000
2. 특수정원외기간제교원인건비					3,475	0	3,475	
1. 기간제교원인건비					3,419	0	3,419	(성립전)성과상여금 1,709,500원×2명= 3,419,000
2.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56	0	56	4대보험기관부담금 55,260원×1회= 56,000
2.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3,590	7,040	-3,450	
1. 교직원연수					3,290	2,800	490	
1. 직무연수					1,800	2,800	-1,000	
1. 일반수용비					1,800	2,800	-1,000	교육경비 (90,000원×20회) - 2,800,000= -1,000,000
2. 학교자치활성화					1,490	0	1,490	
1. 일반수용비					260	0	260	(성립전)운영물품 20,000원×13개×1종= 260,000
2. 운영수당					660	0	660	(성립전)강사비 110,000원×1명×6회= 660,000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570	0	570	(성립전)협의회비 30,000원×19명×1회= 570,000
2. 교직원복지					300	4,240	-3,940	
1. 학습공동체 운영					0	1,140	-1,140	
1. 교직원복지비					0	1,140	-1,140	학습공동체 운영비 지원 (0) - 1,140,000= -1,140,000
2. 교육과정워크숍					300	3,100	-2,800	
1. 여비					0	2,800	-2,800	여비 (0) - 2,800,000= -2,800,000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08,073	27,146	80,927	
1. 급식 관리					14,014	16,319	-2,305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학교급식운영			14,014	16,319	-2,305	
		1. 비조리교급식운영			12,509	13,295	-786	
			3. 교육운영비	157	480	-323	비급식일중식비 (156,600원×1회) - 480,000=	-323,000
			4. 전출금	10,652	11,115	-463	비조리교급식비전출 (4,070원×2,617식) - 11,115,000=	-463,000
		2. 우유급식비			1,505	3,024	-1,519	
			1. 우유대금	1,505	3,024	-1,519	급식용우유대금 (420원×3,583개) - 3,024,000=	-1,519,000
		2. 보건 관리			9,006	4,747	4,259	
		1. [국고]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3,316	2,733	583	
		1. 응급학생수송비			0	100	-100	
			1. 학생복지비	0	100	-100	부상학생후송비및치료비 (0) - 100,000=	-100,000
		2. 보건실운영			532	700	-168	
			1. 일반수용비	0	100	-100	환경물품 (0) - 100,000=	-100,000
			2. 학생복지비	532	600	-68	침구세탁비 (16,000원×2회) - 100,000=	-68,000
		3. 학생건강검사			650	937	-287	
			1. 학생복지비	650	937	-287	건강검사(1학년) (20,790원×12명) - 286,000=	-36,000
							건강검사(4학년) (16,220원×11명) - 204,000=	-25,000
							건강검사(비만학생) (22,580원×2명) - 72,000=	-26,000
							건강관리프로그램(비만) (0) - 200,000=	-200,000
		4. 보건교육			634	570	64	
			1. 일반수용비	300	570	-270	응급처치교육비, 교직원심폐소생술 (15,000원×20명×1회) - 570,000=	-270,000
			2. 운영수당	334	0	334	교직원4대폭력예방교육 334,000원×1명×1회=	334,000
		5. 질병예방			0	426	-426	
			1. 일반수용비	0	126	-126	교직원결핵검진비 (0) - 126,000=	-126,000
			2. 학생복지비	0	300	-300	재해대책비 (0) - 300,000=	-300,000
		6. [국고]흡연예방교육			1,500	0	1,500	
			1. 일반수용비	1,150	0	1,150	(성립전)금연환경조성물품구입 19,166원×60명×1회=	1,150,000
			2. 교육운영비	350	0	350	(성립전)인형극 관람 350,000원×1회=	350,000
		2. 학교환경위생관리			5,690	2,014	3,676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먹는물관리		1,615	1,234	381	
			1. 일반수용비		1,615	1,234	381	정수기렌탈, 유지관리 (31,240원×3대×12월) - 744,000= 381,000
			2. 공기질측정		495	700	-205	
			1. 일반수용비		495	700	-205	공기질측정검사수수료 (495,000원×1회) - 700,000= -205,000
			4. 학습환경관리		3,500	0	3,500	
			1. 일반수용비		3,500	0	3,500	(성립전)공기정화장치 임대료, 운영비 50,000원×7대×10월= 3,500,000
		3. 교육격차 해소			72,500	0	72,500	
		1.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55,640	0	55,640	
			1. 농산어촌대상자지원		49,640	0	49,640	
			1. 학생지원금		49,640	0	49,640	(성립전)농산어촌방과후지원 18,947원 ×57명×10월= 10,800,000
								(성립전)농산어촌방과후지원(지자체) 8,771원×57명×10월= 5,000,000
								(성립전)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59,368원 ×57명×10월) - 21,040,000 = 12,800,000
								(성립전)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36,912원 ×57명×10월= 21,040,000
			2. 특수교육대상자지원		6,000	0	6,000	
			1. 학생지원금		6,000	0	6,000	(성립전)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120,000원×5명×6월+600,000원×4명) - 3,600,000 = 2,400,000
								(성립전)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교육비 지원 120,000원×5명×6월= 3,600,000
			2. 현장체험학습비지원		3,000	0	3,000	
			1. 수학여행비지원		3,000	0	3,000	
			1. 학생지원금		3,000	0	3,000	수학여행지원 150,000원×20명= 3,000,000
			3. 누리과정비지원		13,860	0	13,860	
			1. 유치원누리과정지원		13,860	0	13,860	
			1. 학생지원금		13,860	0	13,860	(성립전)유치원누리과정지원 110,000원 ×14명×9회= 13,860,000
		4. 학생복지			12,553	6,080	6,473	
		1. 교육복지우선			5,500	0	5,500	
			1. 교육복지사업운영비		5,500	0	5,500	
			1. 운영수당		2,700	0	2,700	(성립전)강사수당 45,000원×6명×10회= 2,700,000
			2. 교육운영비		2,800	0	2,800	(성립전)교육복지사업운영 26,000원×25명×2회= 1,300,000
								(성립전)학급응집력프로그램운영 25,000원×60명×1회= 1,500,000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학생복지운영		7,053	6,080	973	
			3. 통학비 지원		973	0	973	
			1. 학생복지비		973	0	973	(성립전)통학비 12.79km×200원×2회 ×101일= 517,000
								통학비 (12.79km×200원×2회×190일) - 517,000= 456,000
			3. 기본적 교육활동		79,193	58,800	20,393	
			1. 교과 활동		57,156	35,100	22,056	
			1. 교과활동지원		12,024	10,375	1,649	
			3. 학습준비물구입		3,274	3,375	-101	
			1. 학습준비물		3,274	3,375	-101	학습준비물(전체) (20,781원×57명×2회) - 1,500,000= 870,000
								학습준비물(저소득층학생추가분) (0) - 875,000= -875,000
								학습준비물(예술교과) (45,175원×10종 ×2회) - 1,000,000= -96,000
			4. 보충과정운영		0	4,300	-4,300	
			1. 운영수당		0	4,000	-4,000	강사료 (0) - 4,000,000= -4,000,000
			2. 교육운영비		0	300	-300	교육용소모품구입 (0) - 300,000= -300,000
			5. 교과용교과서(지도서)구입		750	700	50	
			1. 교육운영비		750	700	50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10,714원×35 권×2회) - 700,000= 50,000
			6. 맞춤형학습지원		6,000	0	6,000	
			1. 운영수당		6,000	0	6,000	(성립전)강사료 600,000원×1명×10월= 6,000,000
			2. 과학교과활동		5,200	2,500	2,700	
			1. 교과운영		3,200	500	2,700	
			2. 비품구입비		2,700	0	2,700	(성립전)폐수장구입 2,700,000원×1대= 2,700,000
			4. 외국어교과활동		3,400	600	2,800	
			2. 영어캠프운영		2,800	0	2,800	
			1. 운영수당		2,280	0	2,280	(성립전)강사비 30,000원×4시간×19일= 2,280,000
			2. 교육운영비		400	0	400	(성립전)교육용품구입 10,000원×8종×5 회= 400,000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120	0	120	(성립전)업무추진협의회 10,000원×12명 ×1회= 120,000
			5. 특수교육교과활동		4,000	4,000	0	
			1. 교과운영		2,000	2,000	0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교육운영비	1,345	1,500	-155	사회적응활동 (33,800원×5명×5회) - 1,000,000=	-155,000
				3.비품구입비	255	400	-145	교구확충비 (255,000원×1종) - 400,000=	-145,000
				4.기타자산취득비	300	0	300	소프트웨어구입 300,000원×1식=	300,000
			6.유치원교과활동		31,782	16,875	14,907		
			1.교과운영		3,945	3,995	-50		
				1.교육운영비	2,945	2,995	-50	자료제작(교육계획서등) (50,000원×1종×1회) - 100,000=	-50,000
			5.각종행사활동		3,323	3,350	-27		
				1.교육운영비	3,323	3,350	-27	입학식운영용품 (323,000원×1회) - 500,000=	-177,000
								졸업및수료앨범제작 (59,375원×16권×1회) - 800,000=	150,000
			7.하모니자원봉사자활동비		6,360	4,720	1,640		
				1.운영수당	6,240	4,600	1,640	하모니자원봉사자활동비 (30,000원×1명×208일) - 4,600,000=	1,640,000
			8.학급환경정리		734	650	84		
				1.일반수용비	734	650	84	청소용품 (66,800원×5회) - 250,000=	84,000
			9.현장체험학습		1,650	2,300	-650		
				1.연료비	350	300	50	배차차량유류비 (35,000원×1대×10회) - 300,000=	50,000
				2.교육운영비	1,300	2,000	-700	차량임차료 (0) - 400,000=	-400,000
								체험활동비 (13,000원×10명×10회) - 1,600,000=	-300,000
			10.학부모교육		770	720	50		
				1.일반수용비	400	500	-100	행사용품구입 (400,000원×1회) - 500,000=	-100,000
				2.운영수당	350	200	150	강사료 (350,000원×1회) - 200,000=	150,000
			11.누리과정운영		13,860	0	13,860		
				1.교육운영비	13,860	0	13,860	(성립전)교육과정지원 60,000원×14명×9회=	7,560,000
								(성립전)방과후과정지원 50,000원×14명×9회=	6,300,000
			2.창의적 체험활동		22,037	23,700	-1,663		
			1.자율활동		14,287	10,230	4,057		
			1.학습발표회		2,000	2,500	-500		
				1.교육운영비	2,000	2,500	-500	행사용품구입 (20,000원×50종×2회) - 2,500,000=	-500,000
			3.교내행사운영		230	500	-270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교육운영비	230	500	-270	행사용품구입 (23,000원×5종×2회) - 500,000= -270,000
				4. 과학경연대회	27	200	-173	
				1. 교육운영비	27	200	-173	대회출전경비및용품 (27,000원×1회) - 200,000= -173,000
				8. 로컬에듀	7,000	1,000	6,000	
				1. 교육운영비	7,000	1,000	6,000	체험활동비 (0) - 1,000,000= -1,000,000
								(성립전)따뜻한학교운영 700,000원×10회 = 7,000,000
				9. 과학의 달 운영	0	1,000	-1,000	
				1. 교육운영비	0	1,000	-1,000	행사용품구입 (0) - 1,000,000= -1,000,000
				2. 현장체험학습활동	7,166	13,170	-6,004	
				1. 현장학습	22	4,200	-4,178	
				1. 연료비	22	0	22	차량유류비등 22,000원×1대×1회= 22,000
				2. 교육운영비	0	4,200	-4,200	차량임차료 (0) - 2,400,000= -2,400,000
								체험료등 (0) - 1,800,000= -1,800,000
				2. 숲체험	3,038	3,360	-322	
				1. 연료비	48	0	48	차량유류비등 48,000원×1회= 48,000
				2. 교육운영비	2,990	3,360	-370	차량임차료 (450,000원×1대×1회) - 1,200,000= -750,000
								체험료등 (254,000원×10회) - 2,160,000= 380,000
				3. 계절스포츠체험	228	1,850	-1,622	
				1. 연료비	0	50	-50	배차차량유류비 (0) - 50,000= -50,000
				2. 교육운영비	228	1,800	-1,572	차량임차료 (0) - 1,200,000= -1,200,000
								체험료등 (4,000원×57명×1회) - 600,000= -372,000
				4. 수학여행	3,878	3,760	118	
				1. 여비	718	600	118	인솔교사여비 (179,395원×4명) - 600,000= 118,000
				3. 동아리활동	584	300	284	
				1. 동아리활동	0	300	-300	
				1. 학생복지비	0	300	-300	학생동아리지원 (0) - 300,000= -300,000
				2. 학교스포츠클럽활동	580	0	580	
				1. 학생복지비	580	0	580	(성립전)학교스포츠클럽활동 10,000원×58명×1회= 580,000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3. 청소년단체활동		4	0	4	
			1. 학생복지비		4	0	4	학생단체활동 3,900원×1회= 4,000
4. 선택적 교육활동					106,287	60,925	45,362	
1. 방과후학교 운영					97,922	53,505	44,417	
1. 방과후학교운영					23,420	0	23,420	
1. 특기적성교육					15,800	0	15,800	
1. 교육운영비					15,800	0	15,800	(성립전)위탁운영비 (36,300원×4시간×98일) - 9,293,000 = 4,937,000
								위탁운영비 (31,325원×400시간) - 14,230,000= -1,700,000
								(성립전)위탁운영비 36,300원×4시간×64일= 9,293,000
								교육용소모품구입 (327,000원×10종×1회) - 1,570,000= 1,700,000
								(성립전)교육용소모품구입 15,070원×50개×2회= 1,507,000
								(성립전)교육용소모품구입 (15,700원×50개×2회) - 1,507,000 = 63,000
2. 토요일스포츠운영					1,620	0	1,620	
1. 운영수당					1,620	0	1,620	(성립전)토요일스포츠수당 30,000원×2시간×27주= 1,620,000
3. 특수학급방과후학교운영					6,000	0	6,000	
1. 운영수당					3,180	0	3,180	(성립전)강사비 (30,000원×1명×106시간) - 1,800,000 = 1,380,000
								(성립전)강사비 30,000원×1명×60시간= 1,800,000
2. 교육운영비					2,820	0	2,820	(성립전)재료구입 (65,000원×4명×5월+255,000원×4명) - 1,300,000 = 1,020,000
								(성립전)재료구입 65,000원×4명×5월= 1,300,000
								(성립전)외부기관방과후교육비지원 100,000원×1명×5월= 500,000
2. 돌봄교실운영					65,449	46,005	19,444	
1. 돌봄전담인력운영					31,609	46,005	-14,396	
1. 무기계약직원인건비					29,130	43,037	-13,907	돌봄전담사인건비 (1,213,750원×2명×12월) - 43,037,000= -13,907,000
2.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2,479	2,968	-489	4대보험기관부담금 (103,291원×2명×12월) - 2,968,000= -489,000
2. 돌봄교실운영					33,840	0	33,840	
1. 교육운영비					31,315	0	31,315	위탁운영비 (36,000원×3종×264시간) - 31,037,000= -2,525,000
								(성립전)위탁운영비 36,300원×5시간×115일= 20,873,000
								(성립전)위탁운영비 (36,300원×855시간) - 20,873,000 = 10,164,000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교육용소모품구입 16,700원×10 총= 167,000
								(성립전)교육용소모품구입 (28,030원×50 총×2회) - 167,000 = 2,636,000
				2. 비품구입비	2,525	0	2,525	컴퓨터등구입 631,250원×4종= 2,525,000
				3.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	9,053	7,500	1,553	
				1.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4,853	3,300	1,553	
				1. 기간제교원인건비	403	300	103	초과근무수당 (10,872원×1명×37시간) - 300,000= 103,000
				2. 교육운영비	4,450	3,000	1,450	간식, 중식비 (3,450원×10명×100회) - 2,000,000= 1,450,000
				2. 독서활동	8,005	6,700	1,305	
				1. 독서활동운영	8,005	6,700	1,305	
				1. 도서관운영	604	1,200	-596	
				1. 교육운영비	604	1,200	-596	도서관운영용품 (15,500원×10종×2회) - 800,000= -490,000 별빛독서교실 (14,700원×20종×1회) - 400,000= -106,000
				2. 도서구입	5,901	5,500	401	
				2. 도서구입비	5,001	4,600	401	(성립전)큰그림책구입 40,100원×5권×2 학급= 401,000
				3. 학부모자원봉사활동	1,500	0	1,500	
				1. 운영수당	1,500	0	1,500	(성립전)자원봉사활동비 150,000원×5명 ×2회= 1,500,000
				3.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360	720	-360	
				1. 다문화교육운영	360	720	-360	
				1. 다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360	720	-360	
				1. 운영수당	300	240	60	강사비 (50,000원×3명×2시간) - 240,000= 60,000
				2. 교육운영비	60	480	-420	교육용품구입 (1,000원×60명×1회) - 480,000= -420,000
				5. 교육활동 지원	27,284	14,210	13,074	
				1. 교무업무 운영	3,822	3,865	-43	
				1. 교무학사운영	3,822	3,865	-43	
				3. 환경정리	922	1,000	-78	
				1. 일반수용비	922	1,000	-78	실내외현황판교체 (222,000원×1회) - 300,000= -78,000
				4. 청소용품	935	900	35	
				1. 일반수용비	935	900	35	청소용품구입 (5,194원×90종×2회) - 900,000= 35,000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생활지도운영		7,164	2,115	5,049	
			1. 학생생활상담지도		6,840	620	6,220	
			1. 학생생활지도운영		0	500	-500	
				1. 교육운영비	0	500	-500	교육용품구입 (0) - 500,000= -500,000
			2. 배움터자원봉사자활동비		6,840	120	6,720	
				1. 운영수당	6,720	0	6,720	(성립전)배움터자원봉사자활동비 560,000 원×1명×12월= 6,720,000
			2. 학생안전교육		324	1,495	-1,171	
			1. 재난안전체험		57	325	-268	
				1. 연료비	37	0	37	차량유류비 37,000원×1대×1회= 37,000
				2. 교육운영비	20	325	-305	차량임차료 (0) - 300,000= -300,000
								체험활동비 (1,000원×20명×1회) - 25,000= -5,000
			2. 물놀이안전체험		267	840	-573	
				1. 연료비	34	0	34	차량유류비 34,000원×1대×1회= 34,000
				2. 교육운영비	233	840	-607	차량임차료 (5,000원×1대×1회) - 600,000= -595,000
								체험활동비 (4,000원×57명×1회) - 240,000= -12,000
			3. 인권교육		0	330	-330	
				1. 운영수당	0	330	-330	강사비 (0) - 330,000= -330,000
			3. 학습지원실 운영		16,298	8,230	8,068	
			1. [국고]정보화실운영		16,298	8,230	8,068	
			1. 학교정보화지원		6,498	8,230	-1,732	
				2. 비품구입비	3,792	5,200	-1,408	컴퓨터구입 (3,791,850원×1회) - 1,900,000= 1,892,000
								태블릿충전함 (0) - 3,300,000= -3,300,000
				3. 기타자산취득비	176	500	-324	소프트웨어구입 (176,000원×1회) - 500,000= -324,000
			2. [국고]S/W선도학교운영		8,000	0	8,000	
				1. 운영수당	1,600	0	1,600	(성립전)강사비 32,000원×1명×50시간= 1,600,000
				2. 교육운영비	2,400	0	2,400	(성립전)교구및재료구입 100,000원×16종×1회= 1,600,000
								(성립전)행사운영비 400,000원×1종×2회= 800,000
				3. 비품구입비	4,000	0	4,000	(성립전)기자재구입 1,000,000원×4대= 4,000,000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3. 찾아가는SW교육		300	0	300	
			1. 운영수당		110	0	110	(성립전)강사비 (기본70,000원+추가40,000원)×1명×1회= 110,000
			2. 교육운영비		190	0	190	(성립전)교구구입 95,000원×2개×1회= 190,000
			4. SW교육 교구 지원		1,500	0	1,500	
			1. 교육운영비		1,500	0	1,500	(성립전)운영용품구입 100,000원×15종×1회= 1,500,000
6. 학교 일반운영					156,364	130,727	25,637	
1. 학교기관 운영					91,858	81,713	10,145	
1. 부서기본운영					40,551	30,291	10,260	
1. 행정실운영					32,651	22,391	10,260	
1. 일반수용비					3,996	5,196	-1,200	프린터토너등 (100,000원×2개×3회) - 1,000,000= -400,000
								사무용기기유지보수 (125,000원×4종×1회) - 1,000,000= -500,000
								업무용도서 등 (0) - 300,000= -300,000
3. 여비					13,160	11,400	1,760	순회여비 20,000원×1명×88회= 1,760,000
6. 비품구입비					14,700	5,000	9,700	각종집기 (1,470,000원×5종×2회) - 5,000,000= 9,700,000
2. 행정지원인력운용					42,397	42,264	133	
3. 교무실무사인건비					133	0	133	
1. 무기계약직원인건비					123	0	123	초과근무수당 15,251원×1명×8시간= 123,000
2.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10	0	10	4대보험기관부담금 9,610원×1회= 10,000
3. 병설유치원기본운영					8,910	9,158	-248	
1. 유치원운영					8,910	9,158	-248	
1. 일반수용비					3,524	3,978	-454	사무용품, 운영용품 구입 (0) - 300,000= -300,000
								프린터토너등 (88,000원×1개×1회) - 400,000= -312,000
								소모품구입 (109,000원×10회) - 600,000= 490,000
								소규모수선비 (667,600원×1회) - 1,000,000= -332,000
2. 전기요금					3,178	3,000	178	전기요금 (1,588,585원×2월) - 3,000,000= 178,000
3. 상하수도료					428	400	28	상하수도요금 (213,830원×2월) - 400,000= 28,000
2. 시설 장비 유지					61,696	46,514	15,182	
1. 학교시설장비유지					61,696	46,514	15,182	

2019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3. 시설관리용역		4,520	6,110	-1,590	
			1. 일반수용비		4,520	6,110	-1,590	전기안전점검용역료 (107,000원×10월) - 880,000= 190,000
								어린이놀이시설점검료 (60,000원×10월) - 1,000,000= -400,000
								냉난방기청소용역 (0) - 1,700,000= -1,700,000
								기름걸레세탁 용역료 32,000원×10월= 320,000
			4. 시설일반관리		29,432	12,336	17,096	
			2. 일반수용비		28,096	11,000	17,096	소규모수선비 (2,509,600원×2식×5회) - 6,000,000= 19,096,000
								꽃종자, 모종 (0) - 2,000,000= -2,000,000
			7. 화장실관리		1,340	1,664	-324	
			1. 일반수용비		1,340	1,664	-324	비데관리 (38,000원×10개×1회) - 704,000= -324,000
			3. 학교운영 협력		2,810	2,500	310	
			2. 학부모협력		1,810	1,500	310	
			2. 학부모교육		300	500	-200	
			1. 일반수용비		0	200	-200	행사용품구입 (0) - 200,000= -200,000
			3. 학교자치활성화		510	0	510	
			1. 교육운영비		510	0	510	(성립전)체험비 7,000원×30명×2회= 420,000
								(성립전)간식비 3,000원×30명×1회= 90,000
			7. 학교 재무활동		2,000	2,000	0	
세출합계					514,944	300,848	214,096	